

수 신 회원사

제 목 「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」 관련 찬성의견 개진 협조 요청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최근 김종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」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찬성의견을 개진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가. 법 안 명 :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나. 대표발의 : 김종양 의원(의안번호 2219877, ‘26. 7. 9)

다. 주요내용

- 근로자가 이동·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
작업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(안 제40조의2)
-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제175조제6항제3호)

라. 의견제출방법 :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

(<https://pal.assembly.go.kr/napal/main/main.do>)

- ① 로그인 후 메인화면 검색창에 “산업안전보건법” 법률안 검색
- ②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종양의원 등 11인) 선택
- ③ 찬성의견 중심 간략 작성 후 의견 등록

※ 1인당 1건만 등록 가능

※ 의견 제출은 입법예고 기간에만 가능

마 입법예고기간 : ‘26. 7. 22.(수)까지

- 붙임 1.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.
2. 법률 개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 협조요청 1부.
3.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및 의견제출 방법 1부. 끝.

※ **붙임문서는 seoul.kosca.or.kr 시·도소식 - 공문/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**

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
회 장 김 홍 수



담당자 수주정책팀 팀원 박민정 선임 김태문 팀장 고광양
시행 전건협 서울 제804호(2026. 7. 9)

☎07071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(신대방동, 전문건설회관 9층) / <http://www.koscall.or.kr>
전화 02)3284-0618 전송 02)3284-0602 / 전자우편 ktm815@kosca.or.kr